

<별표10의4> <신설 2014.11.4, 개정 2014.12.12>

### 3종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기준

(제3-26조제1항, 제3-27조제1항, 제3-28조제1항 관련)

#### 1. 경영개선권고

- 가. 영업용순자본비율이 150% 미만인 경우
- 나. 제3-25조에 따른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이 3등급(보통)이상으로서 자본적정성 부문의 평가등급을 4등급(취약)이하로 판정받은 경우
- 다.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가목 또는 나목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
#### 2. 경영개선요구

- 가. 영업용순자본비율이 120% 미만인 경우
- 나. 제3-25조에 따른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을 4등급(취약) 이하로 판정받은 경우
- 다.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가목 또는 나목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
#### 3. 경영개선명령

- 가. 영업용순자본비율이 100% 미만인 경우
- 나. 「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부실금융기관에 해당하는 경우